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정책 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7. 11. 2(목) ~ 11. 15(수) <14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3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본부 ·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능력개발원, (동부, 남부)여성발전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청소년건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파란꿈터), (동대문구,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동대문글로벌센터 - 복지본부 소관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굿월스토어, 그린내, 문혜장애인요양원, 평화로운집, 에쓰알씨보듬터, 생수의집, 루디아의집) <노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동,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영보노인요양원) <자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평의마을, 양평쉼터) - 시민건강국 소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라매, 동부, 북부, 서남, 장애인치과) 병원, 은혜로운집,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더 민 불 주 어 당	박 양 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전문위원 : 정창훈 · 행정 5급 : 김동현 · 전문위원 : 이문성 · 입법조사관 : 이은영 · 입법조사관 : 한영근 · 입법지원 : 이정화 · 행정 6급 : 박순찬 · 사회복지 6급 : 유선숙 · 행정 7급 : 구금모 · 행정 7급 : 김경량 · 기능 7급 : 심선영 · 속기 및 녹취요원 : 3명
부위원장	더 민 불 주 어 당	김 창 원	
부위원장	바 른 정 당	이 복 근	
위 원	더 민 불 주 어 당	김 선 갑	
		김 혜 련	
		성 백 진	
새 누 리 당	국 민 의 당	오 승 록	
		권 미 경	
		이 병 해	
		박 마 루	
		유 청	

5. 일정 및 장소

일 시	시간	감 사 대 상	장 소	비고
2017.11.2(목)	10:00	<p>〈여성가족재단〉</p> <p>〈여성관련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발전센터(동부, 남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회 회의실	
2017.11.3(금)	10:00	<p>〈여성관련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청소년건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꿈나무마을(초록꿈터, 파란꿈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동대문구, 영등포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동대문글로벌센터 	위원회 회의실	
2017.11.6(월)	10:00	<p>〈여성가족정책실〉</p>	위원회 회의실	
2017.11.7(화)	10:00	<p>〈장애인관련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굿월스토어, 그린내, 문혜장애인요양원, 에쓰알씨보듬터, 평화로운집, 생수의집, 루디아의집 <p>〈자활관련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의마을, 양평쉼터 	위원회 회의실	
2017.11.8(수)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일 시	시간	감 사 대 상	장 소	비고
2017.11.9(목)	10:00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노인관련 시설> ○ (강동,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영보노인요양원	위원회 회의실	
2017.11.10(금)	10:00	<복지본부>	위원회 회의실	
2017.11.13(월)	10:00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위원회 회의실	
2017.11.14(화)	10:00	<위탁병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건강관련 시설> ○ 은혜로운집,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위원회 회의실	
2017.11.15(수)	10:00	<시민건강국>	위원회 회의실	

※ 상기 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 감사 사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예산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 회계처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 정책 실행 및 산하사업소·위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사회참여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보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아동·여성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재단 등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 재단 및 여성능력개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인 육성 및 여성기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여성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성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복지본부 및 산하사업소·위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모혼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노숙자 보호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노인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서울시 복지재단 및 50플러스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재단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기반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사업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민건강국 및 산하사업소 · 위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등 -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운영실태·시설 현대화, 전염병 예방·관리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보건환경 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의약품 및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 환경실태의 체계적 조사·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에 관한 사항 - 시책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사항 등
서 의 료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사업 내실화,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및 인근 산업체와 진료연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 진단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위탁병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의 합리적 운영과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노인환자 진료, 장애인 구강진료 등 특수진료에 관한 사항 - 시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16.11월 ~ 2017.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7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성과)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 2」 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해당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

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7.

9.28(목)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의 법인대표를 증인으로 함.
- (2)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발부

다. 감사 진행순서

-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2) 위원장 인사
- (3) 피감사기관 선서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업무현황 보고·청취
- (6)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등의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침

- (1)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2)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 (2) 감사 직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
- (3) 보건복지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17.11.30(목)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 (5) 본회의 의결

- ※ 첨부 : 1.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 (붙임1)
2. 선서문안 (붙임2)
3.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서식 (붙임3)
4. 감사결과 의견서 (붙임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추진일정

구분	일 정	추진내용	소관부서	비고
사전 준비	8.25(금)	본회의 승인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의사담당관	본회의
	8.25(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안) 통보	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	
	8.28(월) ~8.30(수)	상임위원회별 자체 감사 계획서 의결 후 운영위원회 제출(기일업무)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8.31(목)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 수합, 종합계획서 작성	운영위원회	
	9.1(금)	운영위원회 회의 : 종합계획서 채택	운영위원회 → 의사담당관	
	9.6(수)	본회의 승인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종합계획서 의결	의사담당관	본회의
	9.28(목)	위원회별로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제출 (마감일)	상임위원회 → 의사담당관	
	9.29(금)	최종 수합된 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집행부 통보	의사담당관 → 市 기획담당관	
	10.23(월)	서류(자료)제출 요구 자료 인쇄본 시의원 배부 ※ 피감사기관에서 시의원에게 개별 배부	의사담당관	감사 10일전
감사 실시	11.2(목) ~11.15(수)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 운영위원회 11.15(수) 10:00 ~ (전일)	각 상임위원회	
사후 관리	11.16(목) ~11.30(목)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예정)
	12.19(화)	운영위원회 회의(감사 종합 결과보고서 채택)	운영위원회	(예정)
	12.20(수)	감사 종합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의결)	의사담당관	본회의

※ 제277회 정례회 : 2017.11.1(수)~12.20(수) <50일간>

※ 상기 일정은 의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불 임 2 】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 붙 임 3 】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6.11.1~2017.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6.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 불 임 4 】

감 사 결 과 의 견 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의 사항		
기 타 사 항		